

**2025
화성예술지원
통합 공모**

2.4.(화) _ 2.25.(화)



황정경
<SALT 2024, Salt & Resin on Acrylic>

2025 화성예술지원 통합 공모

2.4.(화) _ 2.25.(화)

화성시문화관광재단

**2025
화성예술지원
통합 공모**



황정경 <SALT 2024, Salt & Resin on Acrylic>

신청기간

2.4.(화)

2.25.(화)

www.hcf.or.kr

화성예술활동지원 | 모든예술31 화성
신진예술인 자립지원 | 장애·다문화 예술인 특화지원

2025 화성예술지원 통합 공모

신청기간

2.4.(화)

|

2.25.(화)

화성예술활동지원 | 모든예술31 화성
신진예술인 자립지원 | 장애·다문화 예술인 특화지원

Contents

들어가며

6	○	2025년 화성시문화관광재단 주요 공모계획 안내
7	○	2025년 화성예술지원 통합공모 주요사항
11	○	화성예술지원 통합공모 안내
19	○	사업별 세부 안내 1. <화성예술활동지원> 사업 - 사업 개요 및 안내 - 공연예술분야 - 시각예술분야 - 문학분야 2. <모든예술31(경기예술활동지원)> 사업 - 사업 개요 및 안내 3. <신진예술인 자립지원> 사업 - 사업 개요 및 안내 4. <장애·다문화 예술인 특화지원> 사업 - 사업 개요 및 안내
53	○	지원금 집행 및 정산 요령
65	○	접수시스템 안내



2025 화성예술지원 통합공모 사업설명회 안내

「화성예술활동지원, 모든예술31, 신진예술인 자립지원, 장애·다문화 예술인 특화지원」

일시 2025. 2. 7.(금) 13:30

장소 동탄북합문화센터 1층 반석아트홀

문의 예술지원팀(031-290-4666~9)



부정청탁금지

화성시문화관광재단은 보조금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비리없는 공정심사를 위해 어떠한 청탁도 받지 않습니다. 청탁 등 비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재단 규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됩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심의로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초석이 되는 길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조리 신고 안내

금품, 청탁, 부당한 업무 신고

화성시문화관광재단 감사팀

031-8015-8242 | 홈페이지 > 메인화면 맨아래 > 클린신고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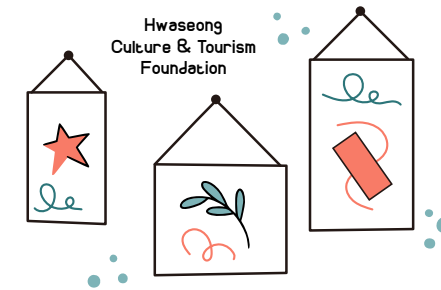
들어가며



(재)화성시문화관광재단은 지역 고유의 예술창작활동이 안정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화성특례시 예술인 여러분의 예술 활동에 자양분이 될 수 있는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자랑스러운 예술인 여러분의 예술 활동 정진을 응원하며, 이번 지원사업이 화성특례시 지역예술 생태에 창의적이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불러오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재)화성시문화관광재단



2025년 화성시문화관광재단 예술지원 주요 공모계획 안내

지원 사업명	지원분야	지원내용	공모시기	접수방법	문의처	비 고
화성 예술 지원 통합 공모	화성예술 활동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술 기획 지원 예술 프로젝트의 기획 과정 및 콘텐츠 개발, 리서치 등 지원 300만원~600만원 차등지원(정액제) 	공고 및 접수 2월 4일(화) ~ 2월 25일(화)	화성예술인 DB 화성예술지원 시스템 온라인접수	예술지원팀 031-290-4666	<2025 화성예술지원> 통합공모 지원 사업 간 동일한 예술인(단체)의 중복 신청 가능하나, 중복 선정은 불가
	예술 활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연, 전시, 출간 등 예술 활동 지원 400만원~2,000만원 차등지원 				
	경기 예술지원 모든예술31 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르 융합/협업 지원 경기도/화성특례시 전문예술인(단체) 지원 *생활문화동호회 선정 제외 1인 예술인, 1개 예술단체 지원 가능 예술인-예술인, 예술단체-예술인, 예술단체-예술단체 자격으로 지원 가능 활동장소 : 화성특례시 개인 또는 개인간 900만~1,500만원/단체 또는 단체(개인)간 900만~3,000만원 차등 지원 				
	신진예술인 자립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진 예술인 창작 및 자립준비금 지원 * 개인당 450만원 x 15명(생애 1회 지급) 				
장애·다문화 예술인 특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다문화 대상 특화 지원 장애 및 다문화 대상 예술 활동 지원 최대 1,500만원 차등 지원 		예술지원팀 031-290-4669			

* 재단 내 타 지원사업과 중복 선정 불가(최종 선정 시 택1)

2025년 화성예술지원 통합공모 주요사항

알기쉬운

1 더 알기쉬운 예술지원 사업 : 통합공모 추진

- 화성특례시 예술지원사업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통합공모 추진
- 화성특례시 지역특색을 반영한 4개 예술지원사업 <2025 화성예술지원> 통합공모

연번	사업명	공모기간	접수처
1	화성예술활동지원	2. 4.(화) ~ 2. 25.(화)	화성예술인DB - 화성예술지원시스템 온라인 접수
2	경기예술지원 모든예술31 화성		
3	신진예술인자립지원		
4	장애·다문화 예술인 특화지원		

지원확대

2 화성특례시 예술지원 확대 : 예술지원의 범주 확대

- 예술 생애주기(Art Life Cycle)별 지원사업 구성

도입	안정화	확장	특화
예술활동 기회 증진, 신진예술인 배양	예술 활동 지원	예술가 협업 지원 (모든예술31)	장애·다문화 예술

개선사항

3 화성예술활동지원

구분	기 존	변경 후(2025년)
지원구분	장르별(공연/시각/문학)	지원구분 세분화 • 장르별(공연/시각/문학) • 지원분야별 (예술 기획/ 예술 활동)
지원내용	지원내용 • 예술창작활동(창작 및 초연, 신작에 대한 지원)	지원내용 세분화 • 예술기획 : 콘텐츠 개발, 리서치 등 기획 과정 • 예술활동 : 창작활동이 아닌 예술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공연, 전시, 출간 형태)
장르별 심의 통합 운영	장르별 심의 파트 구분 • 공연A, 공연B 파트 • 시각A, 시각B 파트	장르별 심의 통합 • 공연 예술 / 시각 예술

구분	기 존	변경 후(2025년)
<예술기획지원> 결과 발표	-	결과 발표 및 선정자 중간 워크숍 • <예술기획> 부문 지원자 필수 참여 • 우수사례 선정 후 차년도 <예술활동> 우선 선정
사례비 편성 확대	지원금의 50% 편성 제한	사례비 편성 제한 없음
단체 대표자 사례비 인상	최대 150만원까지 편성	최대 200만원까지 편성 가능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	화성예술인DB 온라인 접수
지원서식 간소화	지원신청서, 포트폴리오 필수 제출	지원신청서 제출(포트폴리오 내용 포함)

4 사업별 주요 변경사항

구분	기 존	변경 후(2025년)
신진예술인 자립지원	지원대상 : 청년 예술인, 신진예술인, 경력단절 예술인	지원대상 : 청년 예술인(만 19세~39세 이하)
장애·다문화 예술인 특화지원	문화취약계층(장애/다문화)의 예술활동 기회 확대를 위한 맞춤형 특화지원 신규 도입	장애·다문화예술인의 예술활동 기회 확대를 위한 맞춤형 특화지원 지속 운영 (컨설팅 강화)
모든예술31	시민 대상 발표·공유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예술활동 40건 지원	활동이력있는 예술인(단체)의 장르 융합/협업 지원
	지원대상 : 생활예술동호회 포함 모든 예술인	지원대상 : 전문 예술인(단체) ※ 생활문화동호회 선정 제외

- 지원건수 및 지원금액 확대

구분	기 존	변경 후(2025년)
화성예술활동지원	48건 / 400,000천원 지원	50건, 460,000천원 지원 목표

! 예술현장

5 예술 현장을 고려하는 예술지원 : 의견수렴을 통한 예술지원 현장의 편의성 증진

- 지원사업 참여 예술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원사업 운영 개선
 - 지원금에 따른 예술인의 자부담금 편성 의무를 폐지하고, 자부담금 미정산 (단, 모든예술31에 한해서 자부담금 영수증 확인 필수)
 - 단체의 경우 '대표자 사례비' 인정 범위 확대 도입(기획, 연출 등 지원사업 참여 시 편성 가능)

! 공정심의

6 투명하고 공정한 심의 및 평가 운영

- 외부 전문가 심의위원풀 모집 및 선정을 통한 전문성 있고 공정한 심의 진행
- 전문가 평가 및 관객 평가를 통한 지원사업 현장평가 운영
- 투명하고 공정한 지원금 관리를 위해 지원금 교부 요건 강화

구분	내 용
교부요건	교부 신청 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확인
회계검토	전 사업 외부 회계검토 필수 * 문학 출간지원 부분 제외

! 예술 - 시민


7 시민과의 접점을 위한 환류기회 마련

- 예술지원 활동 성과를 나누는 성과공유회 진행
- 신진예술인 자립지원 쇼케이스 진행



Hwaseong
Culture & Tourism
Foundation

2025
화성예술지원
통합공모
지원안내서



2025
화성예술지원
통합공모 안내



2025 화성예술지원 통합공모 안내

2025 화성시예술지원 공모 구성

사업명	내용	지원규모
1. 화성예술활동지원	- 예술기획지원 - 예술활동지원	총 50건 / 4억 6천만원 예산 내 차등 지원 개인 300만~1,200만원 단체 500만~2,000만원
2. 경기예술지원 <모든예술31 화성>	장르 융합/협업 지원 전문예술인(단체) 대상	총 10건 / 1억 7천 8백만원 예산 내 차등 지원 개인 또는 개인간 900만~1,500만원 단체 또는 단체(개인)간 900만~3,000만원
3. 신진예술인 자립지원	청년예술인 자립을 위한 창작준비과정, 실질 창작과정 지원	총 15건 / 6천 750만원 개인 450만원 지원 * 생애 단 한번 평생 1회 지급
4. 장애·다문화 예술인 특화지원	장애/다문화 대상 창작·준비·기획·실행·발표 예술 프로젝트 운영	총 6건 / 9천만원 예산 내 차등 지원 개인 최대 700만원 단체 최대 1,500만원

신청자격

공통신청자격

- 예술인 및 예술단체
- 문화예술진흥법 제 7조에 의한 예술법인 및 단체
- 공고일(2025.2.4.) 이전 화성특례시 소재 예술인 및 예술단체
(단, 모든예술31 - 경기도 포함)
* 주소지 확인 기준 서류
개인 : 주민등록초본 / 단체 :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업별 신청자격

사업명	내용	
1. 화성예술활동지원	문학	등단했거나 혹은 그에 준하는 작품 활동이 인정되는 작가
	시각	개인전 1회 이상 혹은 그룹전 2회 이상 활동실적을 보유한 작가
	공연	화성특례시 공연 예술인 및 예술단체
2. 경기예술지원 <모든예술31 화성>	경기도 거주(소재) 예술인 및 예술단체 *활동장소 : 화성시 관내	
3. 신진예술인 자립지원	청년 예술인(만 19세~39세 이하)	
4. 장애·다문화 예술인 특화지원	화성특례시 거주(소재) 장애·다문화 예술인(단체)	

지원신청 제외사항

■ 지원신청 할 수 없는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
- 국·공립(도·시·구·군립) 문화예술기관·단체 및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학교, 종교기관, 친교기관, 정치단체, 학원, 교습소 및 이들 기관의 소속 또는 운영 단체
- 해당 재단을 비롯한 전국의 보조금 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지원받고도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지원금 미반납 등 관련법령 규정을 위반한 개인 및 단체
- 접수 마감일까지 2024년 화성시문화관광재단 지원사업 정산보고서를 미제출한 개인 및 단체
- 선정 후 화성특례시(경기도) 주소지 확인 시 공고일 이후 전입한 개인·단체
- 지원대상자가 고용 등을 통해 화성특례시의 기금 또는 출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거나 그러한 지원을 받는 단체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성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

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해 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단체

- 제출 서류가 위조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지원신청할 수 없는 사업

- 국고 및 지자체, 공공기관 및 단체의 지원사업에 선정된 사업(화성특례시청, 화성시문화관광재단, 경기문화재단,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타 기초문화재단 등)
- 정치적, 종교적, 상업적 목적의 사업
(※ 목적인 바 아니더라도, 정치·종교·상업적 색채가 짙은 프로그램은 지원불가)
- 학교·종교·시민단체의 행사성 사업
- 상업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 산하 조직의 사업
- 단체의 신규 설립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
- 시설의 건립과 매입, 재건축, 기금적립 및 용자 지원 사업
- 기금 적립과 용자 지원 사업
- 지원금을 통한 재교부 사업

중복신청 및 선정 관련 안내

- 당해연도 동일·유사한 사업으로 (타 기관 지원 사업 포함) **복수의 지원사업 선정 불가**
- 동일한 예술인(또는 단체)은 동일한 사업으로는 (재)화성시문화관광재단의 예술 지원사업인 ‘화성예술활동지원’, ‘경기예술활동지원 모든예술31’, ‘신진예술인 자립 지원’, ‘장애·다문화 예술인 특화지원’ 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별도 사업으로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중복 선정은 불가
- ‘모든예술31 화성’의 경우 경기문화재단에서 진행하는 ‘경기예술활동지원’ 전사업과 중복 선정 불가

Q 대표자가 동일한 단체?

- A 대표자가 동일한 단체 또한 마찬가지로 별도의 사업으로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중복 선정은 불가합니다.(최종 선정 시 택1)

Q 단체의 대표자가 개인 자격으로 신청?

- A 단체 대표자와 개인 신청자가 동일하다면 별도의 사업으로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중복 선정은 불가합니다.(최종 선정 시 택1)

Q 단체 구성원(참여자)이 개인 자격으로 신청?

- A 가능합니다.

공통 유의사항

- 심의에서 미선정된 사업은 별도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 심의 점수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 심의위원 명단과 심의총평 이외의 개별적인 심의 미선정 사유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 자격미달 및 필수제출미비 시 행정심의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 표절 논란 등 저작권 관련 분쟁 발생 시 지원 선정 이후라도 지원결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해당자는 일정 기간 공모지원 신청이 불가합니다.
- 동일사업으로 국고 및 지자체, 공공기관 및 단체의 지원사업에 선정된 사업의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선정 이후라도 확인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선정 후 주소지 확인을 위한 공식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없거나, 공고일 이후 전입이 확인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접수 마감일까지 2024년 화성시문화관광재단 지원사업 정산보고서를 미제출한 개인 및 단체는 지원신청 불가합니다.

■ 현장 지원 안내

- IT활용이 익숙하지 않거나 지원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현장안내를 운영합니다.

기간 : 2025. 2. 10.(월) ~ 2. 21.(금) / 기간 한정 유의

시간 : 평일 10시~ 16시(점심시간 12시 ~ 13시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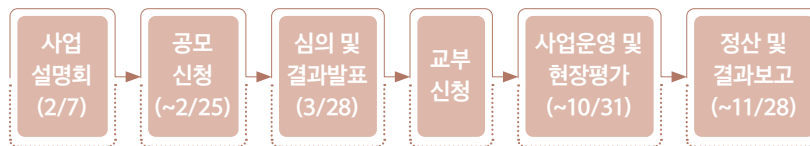
장소 : 동탄복합문화센터 M2층 회의실

- ※ 자택에서 지원신청서를 미리 작성하신 후,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해주세요.
- ※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담당자에게 미리 연락을 주신 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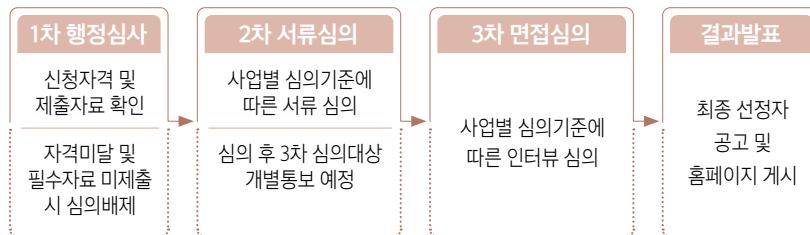
추진일정

구분	일시	내용
공고 및 접수	2. 4.(화) ~ 2. 25.(화)	재단 홈페이지 공고 및 접수
사업설명회	2. 7.(금) 13:30	화성예술지원 사업설명회
행정심의	2. 28.(금)	행정심의
서류심의	3. 4.(월) ~ 3. 11.(화)	서류심의
면접심의	3. 17.(월) ~ 3. 21.(금)	면접심의
최종 결과 발표	3. 28.(금)	재단 홈페이지 공고

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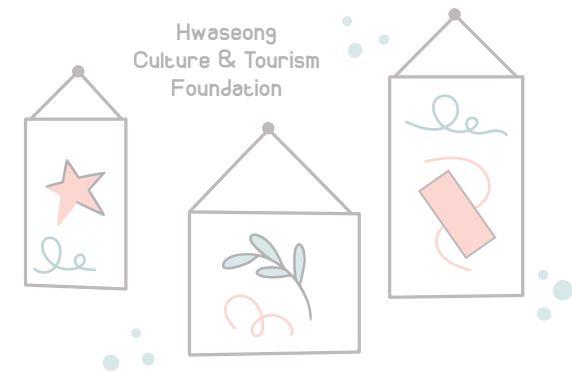
심의절차



문의

팀명	사업명	전화	문의시간
예술지원팀	화성예술활동지원	031-290-4666	평일 10시~17시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모든예술31	031-290-4668	
	신진예술인 자립지원	031-290-4667	
	장애·다문화 특화지원	031-290-4669	

2025 화성예술지원 통합공모 지원안내서



2025
화성예술지원
통합공모
지원안내서

화성예술활동 지원 사업

1

Hwaseong
Culture & Tourism
Foundation

1 2025 화성예술활동지원 공모 안내

공모개요



- **사업명** 2025 화성예술활동지원
- **지원대상** 공고일 이전 화성특례시 거주(소재) 예술인(단체)
- **지원구분** 예술기획, 예술활동
- **지원장르** 공연예술, 시각예술, 문학분야
- **지원규모** 총 4억 6천만원(50건 지원)

공모구성



- **기획지원** 예술 프로젝트의 기획 과정 및 콘텐츠 개발, 리서치 등 지원
- **활동지원** 공연/전시/출판 지원

구분	예술분야	지원내용	신청가능액	
예술 기획 지원	공연예술	공연예술 콘텐츠 기획 및 개발단계 지원 기획, 리서치, 안무·음악·콘텐츠·대본 개발 등	개인, 단체 동일	600만원 (정액)
	시각예술	시각예술 프로젝트 위한 사전작업 지원 기획, 실험, 연구 리서치, 인터뷰, 작품 창작 등	개인, 단체 동일	300만원 (정액)
	문학분야	책 출간을 위한 사전작업 지원 기획, 취재, 연구 리서치, 인터뷰 등	개인, 단체 동일	300만원 (정액)
<예술기획> 지원 선정자 결과 발표 필수(9월 넷째주)				

구분	예술분야	지원내용	신청가능액	
예술 활동 지원	공연예술	공연 예술 활동 지원	개인 예술인	
			평균 800만원	최저 500만원 최고 1,200만원
			예술단체	
	평균 1,300만원	최저 1,000만원 최고 2,000만원		
	시각예술	시각 예술 활동 및 전시 지원	개인 예술인	
			평균 800만원	최저 600만원 최고 1천만원
			예술단체	
	평균 1,000만원	최저 8백만원 최고 1천 2백만원		
	문학분야	문학분야 창작 및 출간지원 ※ 미발표 신작의 연내 출판계약 및 출간 의무	개인 예술인	
평균 400만원			최저 4백만원 최고 5백만원	
예술단체				
평균 500만원	최저 4백만원 최고 6백만원			
계			460백만원	

※ 사업 계획 및 심의 결과에 따라 지원신청금액은 조정될 수 있으며, 차등지원할 수 있음.
 ※ 다른 프로젝트라도 1명의 신청자는 [예술기획지원] / [예술활동지원] 중 1가지만 신청 가능

신청자격



• 신청자격

구분	내용
공통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성특례시 거주자 및 화성특례시 소재 단체 • 예술인 및 예술단체 • 문화예술진흥법(제7조)에 의한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 • 기타 해당 사업별 특성에 적합한 예술인 및 예술단체
사업별 신청자격	문학 등단했거나 혹은 그에 준하는 작품 활동이 인정되는 작가
	시각 개인전 1회 이상 혹은 그룹전 2회 이상 활동실적을 보유한 작가
	공연 화성특례시 공연 예술인 및 예술단체

- 거주지 확인 기준 서류 공고일 이전 거주(소재) 필수

신청구분	확인서류
개인	주민등록초본
단체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 ※ 단체의 대표자 혹은 단원의 주소지 인정 불가
- ※ 선정 후 주소지 확인 시 공고일 이전 화성특례시 거주 확인불가 시 선정취소

심의위원회 구성

●

- 공연예술 / 시각예술 / 문학분야 별 공개추천 및 모집을 통해 선정한 외부 전문가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성 있는 심의 추진

구분		구성인원
심의위원회	● 공연예술(연극, 뮤지컬, 음악, 무용, 전통, 서커스, 다원 등)	4인
	● 시각예술(회화, 설치, 조소, 공예/도예, 사진, 미디어 아트, 영상, 다원 등)	4인
	● 문학부문(소설, 시, 수필, 비평, 희곡 등)	3인

- 심의 기준

구분	자격평가	사업계획	작품내용	기대효과	사업실행	합계
서류 심의	20	30	30	20	-	100
면접 심의	20	-	30	20	30	100

평가

●

- 사업 평가
 - 지원받은 사업은 필수적으로 현장평가 또는 컨설팅을 받아야 하며 관련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 정산 및 성과보고서, 설문조사지 등 관련 자료를 기한(사업종료 일에서 1개월 이내) 내에 성실히 제출해야 합니다. (영상 등 성과 관련 자료 의무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시 평가 불이익이 있습니다.)

지원대상 사업의 변경조치

●

- 사업 선정 후 지원신청서를 기준으로 사업계획의 과도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변경에 따른 조치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

구분	변경항목	조치사항	해당분야
사업주체 변경	사업의 주체 변경 ※ 실질적 주체 변경이 아닌 경우는 예외	내부검토결과에 따라 지원금 취소(환수) 가능	전 분야
사업포기	사업포기기간 이후 사업포기 ※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예외	지원금 취소(환수) 및 차년도 지원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사업량	지원신청 당시 사업량 또는 성과목표 50% 이상 축소	협의를 통해 지원금 삭감 또는 평가 불이익	
변경미신청	변경 신청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변경신청 하지 않은 경우 ※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예외	1~2회 : 주의 및 사후변경신청 3회 이상 : 평가에 반영 (차년도 심의에 반영 가능)	

지원신청방법

●



■ 「지원자 신뢰 신청제」 운영

지원신청 시 전문예술인·단체 여부, 활동경력과 신청자격 등에 대하여 신청 주체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지원자 신뢰 신청제」를 운영합니다. 화성시문화관광재단은 지원 신청자의 판단과 선택을 존중하고 신뢰하며 별도의 조정 없이 심의를 진행합니다. 부정확한 정보, 제출 자료 등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청 주체인 예술인·단체 여러분은 공고 내용을 숙지하신 후 책임감 있게 지원사업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1 공연예술분야 세부 사업별 공모안내

공모내용

- 예술기획지원 공연예술 준비·기획과정 활동비 지원
- 예술활동지원 연극, 무용, 음악 등 공연 활동 지원

지원규모

- 예술기획지원 정액 6백만원
- 예술활동지원 최저 5백만원 ~ 최고 2천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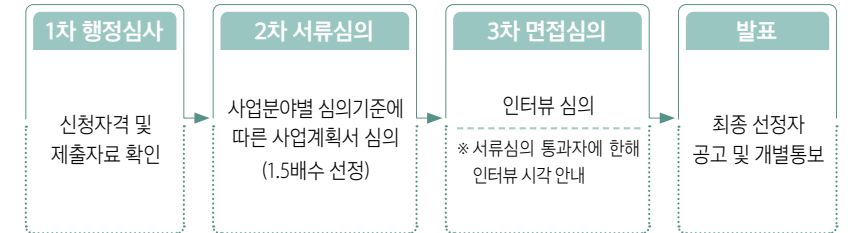
신청자격

- 화성특례시 관내에서 예술기획 및 활동을 진행할 화성특례시 거주(소재) 예술인(단체)

세부 지원방향

구분	지원내용	성과물 * 필수	지원한도(백만원)	
예술 기획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예술 콘텐츠 기획 개발단계 지원 (기획, 리서치, 안무, 음악, 대본, 개발 등) • 9월 결과발표회 참여 필수 	영상(아카이빙 공개용 3분 이상), 대본, 음악 등 결과물 사진 등 (고화질)	6백만원(정액)	
		성과보고서		
예술 활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 예술 (연극, 무용, 음악 등) 	공연 진행	개인 예술인	
		영상(풀영상 1부, 아카이빙 공개용 3분 이상) 및 공연 사진(고화질)	평균 8백만원	최저 5백만원 최고 1천2백만원
			예술단체	
		성과보고서	평균 1천 3백만원	최저 1천만원 최고 2천만원

심의방식



* 예술기획지원 : 3차 면접심의 없음(2차 서류심의로 같음)

필수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 공고문 내 첨부파일의 지원신청서 지정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 추후 선정자에 한해 주민등록초본,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제출 필수
 - 접수마감일 마감시간 이후 서류 제출 불가
 - 별도의 신청서(양식)로 제출시 심의에서 제외

접수방법

- 화성시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 ▶ 화성예술인DB ▶ 지원사업 신청(온라인 접수)
 - 별도의 신청서(양식)로 제출시 심의에서 제외됨

유의할 점

- 예술기획지원, 예술활동지원 중 택1하여 지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일한 사업으로 추후 연속 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예술기획지원'부터 단계별 신청을 권장합니다.
- 개인의 경우 1인극, 독주, 독창, 독무 등을 권장하며 신청자 본인이 실연자여야 합니다.
- 단체의 경우 지원금의 5%에 해당하는 비용은 자부담 편성을 권고합니다.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자부담 편성 여부가 심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발생한 수익금은 전액 해당 지원사업에 사용하거나 정산 시 반환이 원칙입니다.

1-2 시각예술분야 세부 사업별 공모안내

공모내용

- 예술기획지원 시각예술 준비·기획과정·연구과정 활동비 지원
- 예술활동지원 시각예술 작품 전시 지원

지원규모

- 예술기획지원 정액 3백만원
- 예술활동지원 최저 8백만원 ~ 최고 1천2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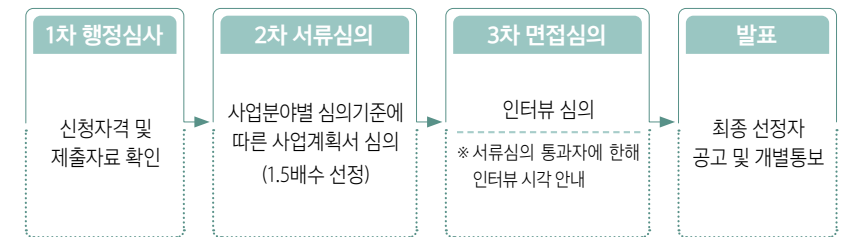
신청자격

- 화성특례시 관내에서 예술기획 및 활동을 진행할 화성특례시 거주(소재) 예술인(단체)

세부 지원방향

구분	지원내용	성과물 * 필수	지원한도(백만원)	
예술 기획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각예술 콘텐츠 기획 개발단계 지원 (실험, 연구 리서치, 인터뷰, 작품 창작 등) ● 9월 결과발표회 참여 필수 	작품사진(고화질), 연구 결과 등 결과물	3백만원(정액)	
		성과보고서		
예술 활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 예술 (연극, 무용, 음악 등) 	전시/상영 진행	개인 예술인	
		전시사진(고화질), 작품사진(고화질)	평균 8백만원	최저 6백만원 최고 1천만원
			예술단체	
		성과보고서	평균 1천만원	최저 1천만원 최고 1천2백만원

심의방식



※ 예술기획지원 : 3차 면접심사의 없음(2차 서류심의로 같음)

필수 제출자료

-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 공고문 내 첨부파일의 지원신청서 지정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 추후 선정자에 한해 주민등록초본,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제출
 - 접수마감일 마감시간 이후 서류 제출 불가
 - 별도의 신청서(양식)로 제출시 심의에서 제외

접수방법

- 화성시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 ▶ 화성예술인DB ▶ 지원사업 신청(온라인 접수)
 - 별도의 신청서(양식)로 제출시 심의에서 제외됨

유의할 점

- 예술기획지원, 예술활동지원 중 택1하여 지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일한 사업으로 추후 연속 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예술기획지원'부터 단계별 신청을 권장합니다.
- 단체의 경우 지원금의 5%에 해당하는 비용은 자부담 편성을 권고합니다.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자부담 편성 여부가 심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발생한 수익금은 전액 해당 지원사업에 사용하거나 정산 시 반환이 원칙입니다.

1-3 문학분야 세부 사업별 공모안내

공모내용

- 예술기획지원 문학 창작준비·기획과정·연구과정 활동비 지원
- 예술활동지원 미발표 신작이 포함된 출간비 지원(연내출간 의무)

지원규모

- 예술기획지원 정액 3백만원
- 예술활동지원 최저 4백만원 ~ 최고 6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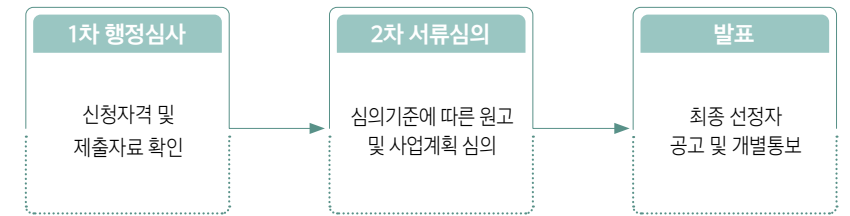
신청자격

- 화성특례시 관내에서 예술기획 및 활동을 진행할 화성특례시 거주(소재) 예술인(단체)

세부 지원방향

구분	지원내용	성과물 * 필수	지원한도(백만원)	
예술 기획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학 콘텐츠 기획 개발단계 지원(연구 리서치, 인터뷰, 작품 창작 등) ● 9월 결과발표회 참여 필수 	시, 소설, 수필 등	3백만원(정액)	
		성과보고서		
예술 활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간지원 	책 출간 진행	개인 예술인	
		출간완료 후 책 5권, 성과보고서	평균 4백만원	최저 4백만원 최고 5백만원
			예술단체	
		평균 5백만원	최저 4백만원 최고 6백만원	

심의방식



필수 제출자료



-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 공고문 내 첨부파일의 지원신청서 지정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 추후 선정자에 한해 주민등록초본,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제출
 - 접수마감일 마감시간 이후 서류 제출 불가
 - 별도의 신청서(양식)로 제출시 심의에서 제외
- (선정자 필수 제출서류) 25년 8월까지 출판계약서 또는 그에 준하는 증빙자료
 - 예술활동지원 선정자에 한해 제출하며 상세 내용은 선정 후 개별안내

접수방법



- 화성시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 ▶ 화성예술인DB ▶ 지원사업 신청(온라인 접수)
 - 별도의 신청서(양식)로 제출시 심의에서 제외됨

문학부문 정산안내



- 예술활동지원의 경우 지원금의 100%를 출간비용(출판사)으로 사용해야 함.
- 정산서 내 지원금에 대한 영수 증빙 없이 아래 세 가지로 같음 (출판물(결과물) 5권, 이체 확인증, 출판 계약서)
- 외부회계검토 불필요



Hwaseong
Culture & Tourism
Foundation

2025
화성예술지원
통합공모
지원안내서

경기예술활동
지원 사업
<모든예술31>

2 2025 경기예술지원 <모든예술31> 화성 공모 안내

공모개요



- **사업명** 2025 경기예술지원 모든예술31 화성
- **지원대상** 공고일 이전부터 경기도 거주(소재) 예술인(단체)
- **지원장르** 장르 융합/협업
 ※ 화성시민을 대상으로 발표·공유가 가능한 공연, 전시 등의 융합/협업 예술활동
- **지원규모** 총 1억 7천 8백만원, 10건 내외 지원
 ※ 양질의 결과물 도출을 위하여 건당 지원금 상향 조정 노력
 (시비 : 1억 3천만원 / 도비 : 4천 8백만원)

공모구성



공모구성

지원내용	신청가능액	지원규모
장르 융합/협업 : 공연, 전시 등 융합/협업 전문예술문화활동 ※ 활동장소 : 화성시 관내 ※ 생활문화동호회 선정 제외 (2025년도 경기문화재단 지침 준수)	예술인 1인 또는 예술인-예술인	총 지원금 1억 7천 8백만원
	최저 9백만원 최고 1천5백만원	
	예술단체 1개 또는 예술단체-예술인(단체)	선정규모 10건 내외
	최저 9백만원 최고 3천만원	

- ※ 기획서를 통해 '장르융합/협업'을 확인할 수 있는 형태여야 함
- ※ 1인 예술인, 1개 예술단체 각 지원 가능. 더불어, '예술인-예술단체', '예술인-예술인', '예술단체-예술단체' 각 형태 지원 가능
- ※ '단순 행사'의 성격이 짙은 사업이 아닌, 화성특례시민 대상 장르융합/협업 전문예술문화 공모
- ※ 사업계획내용 등에 따라 개인/단체 차등지원
- ※ '2025 화성예술지원 통합공모' 및 타 시군 '모든예술31' 사업과 별도의 사업으로 중복신청 가능
하나 최종 선정은 1개만 가능
- ※ '2025경기문화재단 경기예술지원 전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택1 필수

신청 자격



• 신청 자격

신청구분	신청자격	확인서류
공통	• 화성시 관내에서 예술활동을 수행할 경기도 거주(소재) 예술인(단체)	거주지 확인 서류 (아래 참고)
개인	• 경기도 거주 예술인	주민등록초본
단체	• 문화예술진흥법(제 7조)에 의한 예술법인 및 단체 ※ 생활예술동호회 선정 제외	단체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거주지 확인 기준 서류 : 공고일 이전 거주(소재) 필수

신청구분	확인서류
개인	주민등록초본
단체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 ※ 단체의 대표자 혹은 단원의 주소지 인정 불가
- ※ 선정 후 주소지 확인 시 경기도 거주 확인불가 시 선정 취소 (향후 거주 확인불가 시 선정 취소 가능)

■ 「지원자 신뢰 신청제」 운영

지원신청 시 전문예술인·단체 여부, 활동경력과 신청자격 등에 대하여 신청 주체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지원자 신뢰 신청제」를 운영합니다. 화성시문화관광재단은 지원 신청자의 판단과 선택을 존중하고 신뢰하며 별도의 조정 없이 심의를 진행합니다. 부정확한 정보, 제출 자료 등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청 주체인 예술인·단체 여러분은 공고 내용을 숙지하신 후 책임감 있게 지원사업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의



• 심의위원회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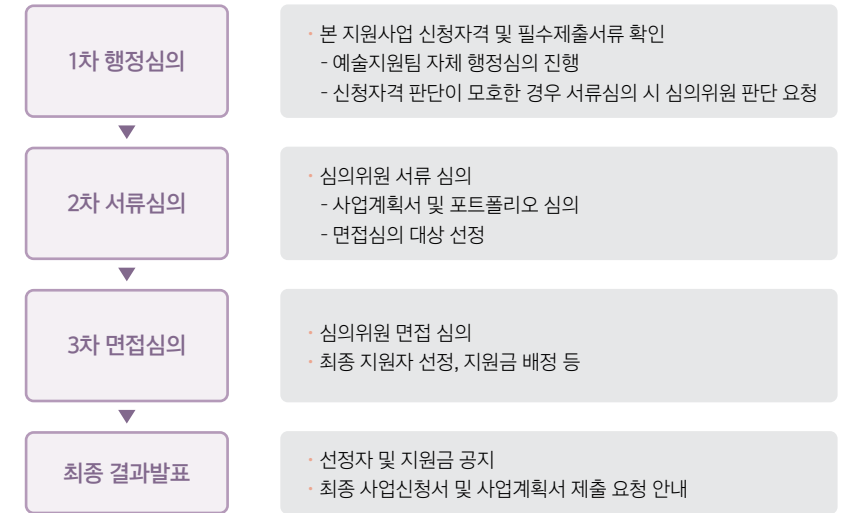
- 공연예술, 시각예술, 문학분야, 다원, 지역문화 등 공개추천 및 모집을 통해 선정한 외부전문가 3명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심의를 진행합니다.

예술분야	세부분야	심의위원
문화예술 전 분야	공연, 음악, 무용, 다원, 시각예술, 지역문화, 문학 등	3명

• 심의기준

구분	기준	배 점	
		서류심의	면접심의
역량평가	사업주체의 예술역량	40	30
	사업주체의 발전가능성		
기획력 평가	예술성	20	30
	보편성		
	완성도		
지역성	지역 특성 반영	10	20
사업실행	실현능력	-	20
총점		100	

• 심의절차



접수



• 필수 제출자료

- 지원신청서+사업계획서 1부(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포함)
- ※ PDF파일(용량 50MB 한정)로 제출(단, 활동 확인할 수 있는 영상, 기사 등 링크 첨부 가능)
- (개인) 주민등록초본, (단체)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 접수 방법

- 공고문 내 첨부파일의 지원신청서 지정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 화성예술인DB(artist.hcf.or.kr)을 통한 지원 접수
- 아래 기간에 한정하여 방문 접수 동시 진행
- ※ 방문접수기간 : 2025. 2. 10.(월) 10시 ~ 2. 21.(금) 16시까지, 점심시간(12시~13시 제외)
- 파일명 : 모든예술31_지원자명(단체명)
- ※ 접수마감일 마감시간 이후 제출서류 미인정
- ※ 별도의 신청서(양식)로 제출 시 심의에서 제외

평가



- **사업 평가**
 - 지원받은 사업은 필수적으로 현장 모니터링을 받아야 하며 관련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 **영상, 정산서, 성과보고서, 설문조사지** 등 관련 자료를 기한(11월 28일) 내에 성실히 제출해야 합니다.(영상 등 성과 관련 자료 의무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시 평가 불이익이 있습니다.)
 - 평가단을 구성하여 현장모니터링을 진행하며, 심의결과는 차년도 지원사업 심의 시 반영될 수 있습니다.
 - 경기문화재단에서 공통으로 시행하는 관객 만족도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지원대상 사업의 변경조치



- 사업명, 사업일시, 사업내용 등 변경 사항 발생 시 사전 변경신청 필수
- '사례비'를 제외하고 전체 사업비의 10% 이내의 예산 변경은 별도 신청 없이 가능

구분	변경항목	해당분야	조치사항
사업 주체	사업의 주체 변경 ※ 실질적 주체 변경이 아닌 경우는 예외	전 분야	내부검토결과에 따라 지원금 취소 가능
포기	사업포기기간 이후 사업포기 ※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예외		지원금 취소(환수) 및 차년도 지원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사업량	지원신청 당시 사업량 또는 사업일수(횟수) 50% 초과 축소		협의를 통해 지원취소 또는 지원금 일부 환수
변경 미신청	변경 신청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변경신청 하지 않은 경우 ※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예외		1~2회 : 주의 및 사후변경신청 3회 이상 : 평가에 반영(차년도 심의에 반영 가능)

유의할 점



- 예술인 1인 개인자격으로 장르융합/협업공모 지원하는 경우, 신청자 본인이 실연자여야 합니다.
- 지원금의 10%에 해당하는 자부담은 자율 편성 가능합니다. 단, 모든예술31 자부담금은 회계법인 정산에서는 제외되나, 영수증 확인은 진행합니다.
- 수익금 발생시, 전액 해당 작품에 재투자하여 사용가능합니다.
※ 사업과 관련한 인건비성 사례비를 포함하는 [행사·홍보비] 전반 / 영수증빙 필수
- 금년 평가결과는 차년도 모든예술31<경기예술활동지원> 심의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홍보물 제작 관련 안내



- ◇ 각종 홍보물(현수막, 포스터, 전단, 팸플릿 등)과 인쇄물을 제작하는 경우, [후원 : 경기도, 경기문화재단 / 주최 : 화성시, 화성시문화관광재단] 기재
- ◇ 각종 홍보물(현수막, 포스터, 전단, 팸플릿 등)과 인쇄물을 제작하는 경우, 관객설문조사 QR코드 홍보물 기재
- ◇ 공연프로그램, 리플렛, 포스터, 도록, 서적, 음반 등 [경기도, 경기문화재단, 화성시, 화성시문화관광재단의 모든예술31(경기예술지원) 사업으로 지원 받았습니] 기재
- ◇ 경기도, 경기문화재단, 화성특례시, 화성시문화관광재단 로고 삽입

문의



- 화성시문화관광재단 예술지원팀 031-290-4668
- 문의시간 평일 10시~17시(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3

Hwaseong
Culture & Tourism
Foundation

2025
화성예술지원
통합공모
지원안내서

신진예술인자립 지원 사업

3 2025 신진예술인 자립지원 공모 안내

공모개요

- **사업명** 2025 신진예술인 자립지원
- **지원대상** 공고일 이전 화성특례시 거주 청년예술인(개인)
- **지원장르** 공연예술, 시각예술, 문학분야 * 예술인복지법 시행령 제 2조
- **지원규모** 총 6,750만원(15건 지원) * 생애 단 한번 평생 1회 지급

공모구성

지원내용	신청가능액	지원규모
예술 활동을 바탕으로 한 자립지원과 관련한 내용 - 선정된 개인의 기획, 실험, 창작 준비과정 지원 - 실질 창작활동 지원 - 예술기획, 실험, 창작 등 예술창작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각종 과정을 지원	개인 예술인	총지원금 : 6천 7백 5십만원
	4백 5십만원 (정액지원)	선정규모 : 15건 내외

* 사업 계획 및 심의 결과에 따라 지원건수는 조정될 수 있음.
 * 정치적, 종교적 목적의 활동은 지원하지 않음

📖 자립준비금 작성예시

- 미술 재료 구입 후 작품을 완성하여 아트마켓 참여, 아트상품 개발하여 자립하겠다.(적합)
- 독립서적 제작을 위한 리서치를 위해 조사 인터뷰 진행 후 책을 발간하여 납품하겠다.(적합)
- 지역 청년 예술가들의 창작활동 개선을 위한 협동조합 설립 및 이들이 함께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적합)
- 작품 제작을 위한 공연의 무대, 소품 제작을 진행하겠다.(적합)
- 미술작업을 위한 재료구매와 작품 전시를 위한 공간 대관료로 사용하겠다. (적합)

신청 자격



• 신청 자격

청년예술인
만 19세~만 39세 이하

■ 「지원자 신뢰 신청제」 운영

지원신청 시 전문예술인·단체 여부, 활동경력과 신청자격 등에 대하여 신청 주체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지원자 신뢰 신청제」를 운영합니다. 화성시문화관광재단은 지원 신청자의 판단과 선택을 존중하고 신뢰하며 별도의 조정 없이 심의를 진행합니다. 부정확한 정보, 제출 자료 등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청 주체인 예술인·단체 여러분은 공고 내용을 숙지하신 후 책임감 있게 지원사업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의무사항



- 최종 선정 이후, 오리엔테이션 필수 참석
- 컨설팅 적극 협조
- 쇼케이스 및 성과보고회 필수 참석
* 세부일정 선정자 대상 추후 공지

구분	일 정	비 고
쇼케이스	2025. 11. 24.(월) ~ 12. 1.(월) (예정)	선정자 필수 참석

심의



• 심의위원회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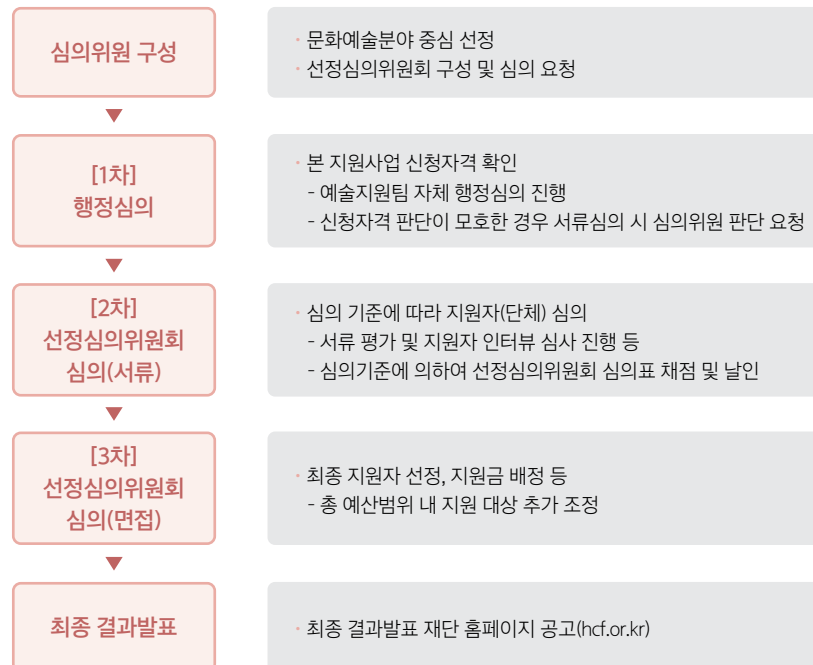
- 예술분야에 따른 공개추천 및 모집을 통해 선정한 외부전문가 3명으로 심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전문성 있는 심의를 추진합니다.

• 심의 기준

구분	기준	배점
지원자격 평가 (20%)	지원자의 예술성, 창의성 및 전문성	10
	지원 예술인의 창작 및 자립활동 수행 역량	10
사업성 평가 (40%)	사업 목적의 적절성 및 사업 이해도	10
	지원자의 활동계획과 본 사업과의 적합성	10
	본 사업 활동의 구체성 및 계획의 충실성	10
추진역량(20%)	사업취지에 부합한 역량 보유 충실한 이행을 통해 사업 목적 달성 기여 가능성	20
	향후 창작 및 자립 활동의 성장가능성 및 지속발전가능성	20
총점		100

* 서류 심의와 면접 심의 기준 동일, 각 평가(심의) 단계 점수는 연계, 승계되지 아니하며 상호 무관함

• 심의 절차



접수



• 필수 제출자료

- 사업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예산계획서, 주요활동실적,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접수 방법

- 화성시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 ▶ 화성예술인DB ▶ 화성예술지원시스템 ▶ 지원사업 신청(온라인 접수)
- 파일명 : 신진예술인자립_지원자명
* 접수여부는 개별 문자 회신 예정
* 별도의 신청서(양식)로 제출시 심의에서 제외

평가



• 현장 컨설팅

- 지원받은 사업은 필수적으로 재단 현장 컨설팅 및 관련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 정산 및 성과보고서, 설문조사지 등 관련 자료를 기한(11월 28일) 내에 성실히 제출해야 합니다. (영상 등 성과 관련 자료 의무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시 평가 불이익이 있습니다.)

지원대상 사업의 변경조치



- 사업 선정 후 지원신청서를 기준으로 사업계획의 과도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변경에 따른 조치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
- ‘사레비’를 제외하고 전체 사업비의 10% 이내의 예산 변경은 별도 신청 없이 가능

구분	변경항목	해당분야	조치사항
사업주체	불가	전 분야	지원금 취소
포기	사업포기기간 이후 사업포기 * 특수한 상황인 경우 예외		지원금 취소(환수) 및 차년도 지원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사업량	지원신청 당시 사업량 또는 사업일수(횟수) 50% 초과 축소		협의를 통해 지원금 삭감 또는 평가 불이익
변경미신청	변경 신청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변경신청 하지 않은 경우 * 특수한 상황인 경우 예외		1~2회 : 주의 및 사후변경신청 3회 이상 : 평가에 반영(차년도 심의에 반영 가능)

홍보물 제작 관련 안내



- ⑥ 각종 홍보물(현수막, 포스터, 전단, 팸플릿 등)과 인쇄물을 제작하는 경우
 - [주최 : 화성특례시, 화성시문화관광재단 / 주관 : 예술인(단체)명] 기재 필수
 - 화성특례시, 화성시문화관광재단 로고 삽입 필수
 - “<2025 신진예술인 자립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았습니다.” 기입 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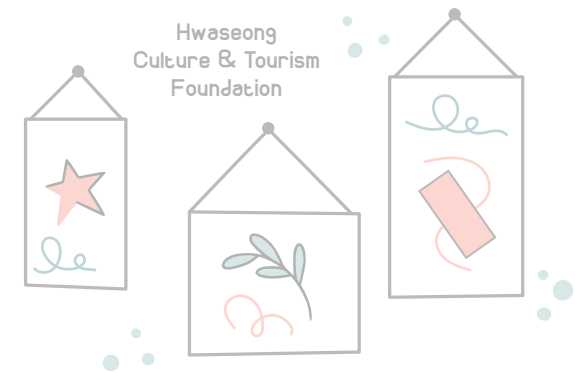
※ 사업 1개월 전까지 홍보물(인쇄물 또는 이미지)을 담당자에게 송부하여 재단 홈페이지에 업로드 되어야 합니다(필수)

문의



- 화성시문화관광재단 예술지원팀 031-290-4667
- 문의시간 평일 10시~17시(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2025 화성예술지원 통합공모 지원안내서



2025
화성예술지원
통합공모
지원안내서

4

Hwaseong
Culture & Tourism
Foundation

장애·다문화 예술인 특화지원 사업

4 2025 장애·다문화 예술인 특화지원 공모 안내

공모개요

- **사업명** 2025 장애·다문화 예술인 특화지원
- **지원대상** 공고일 이전 화성특례시 거주(소재) 장애·다문화 예술인(단체)
- **지원내용** 장애·다문화 예술인 대상 다양한 예술 활동, 발표 지원
- **지원규모** 총 9,000만원(6건 내외 지원)

공모구성

지원내용	신청가능액	지원규모
창작·준비·기획·실행·발표 프로젝트 운영 - 예술 창작활동 운영 계획서 심의를 통해 지원 * 활동지역은 화성특례시에 한정함	개인 예술인	총지원금
	최고 7백만원	9,000만원(구천만원)
	예술단체	선정규모
	최고 1천 5백만원	6건 내외

* 사업 계획 및 심의 결과에 따라 지원신청금액은 조정될 수 있으며, 차등지원할 수 있음.

신청 자격

장애(개인)	장애(단체)	다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분야에서 창작, 실연, 기술 지원 및 기획 형태의 예술창작 활동을 하는 장애예술인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 증명 확인서 소지자 •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술 활동을 펼쳐왔음이 인정되는 예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원 중 화성특례시 거주 장애 예술인이 30% 이상 소속되어 있는 문화예술단체 ※ 단체대표자 또는 프로젝트 구성원 중 중추적인 역할로 참여하고 있는 장애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함(프로젝트 참여자 변경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 예술인 개인 • 다문화가족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단체 ※ 다문화가족 해당자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1호, 2호에 따름

* 위 내용 중 어느 하나에 해당 (개인/단체 간 중복지원 불가 및 공고일 이전 기준 발급분만 인정, 유효기간 확인)

「지원자 신뢰 신청제」 운영

지원신청 시 전문예술인·단체 여부, 활동경력과 신청자격 등에 대하여 신청 주체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지원자 신뢰 신청제」를 운영합니다. 화성시문화관광재단은 지원 신청자의 판단과 선택을 존중하고 신뢰하며 별도의 조정 없이 심의를 진행합니다. 부정확한 정보, 제출 자료 등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청 주체인 예술인·단체 여러분은 공고 내용을 숙지하신 후 책임감 있게 지원사업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의

• 심의위원회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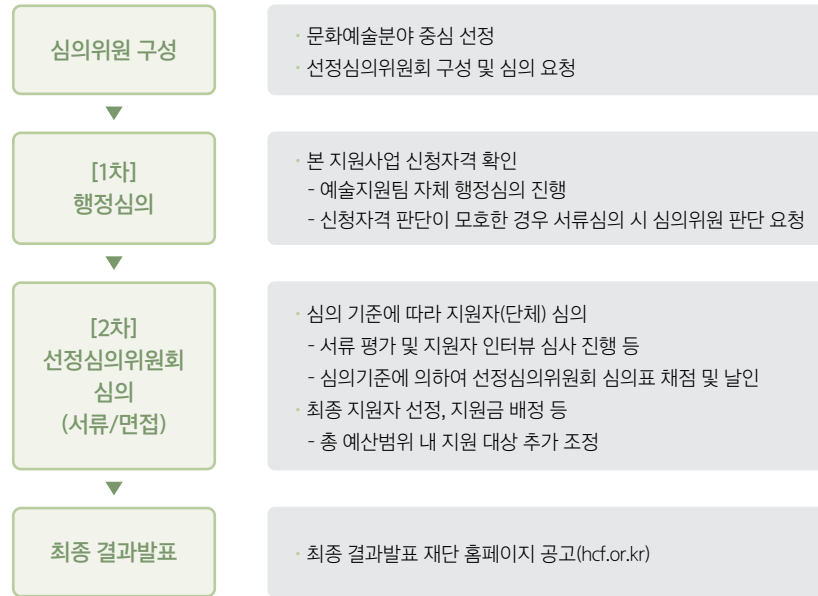
- 예술분야에 따른 공개추천 및 모집을 통해 선정된 외부전문가 3명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전문성 있는 심의를 추진합니다.

• 심의 기준

구분	기준	배점
자격 평가 (20%)	지원사업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	10
	장애·다문화 예술인의 참여가 적절하다. 장애·다문화 예술인의 참여가 적절하게 구성되었다.(단체)	10
계획 평가 (40%)	활동계획(프로젝트)에 예술성, 참신성, 독창성이 있다.	20
	활동계획과 추진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다.	20
추진 역량 (20%)	사업취지에 부합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10
	총실한 이행을 통해 사업 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	10
기대 효과 (20%)	해당 사업을 통해 예술적 성장과 발전 가능성이 기대된다.	20
총점		100

* 서류 심의와 면접 심의 기준 동일, 각 평가(심의) 단계 점수는 연계, 승계되지 아니하며 상호 무관함.

● 심의 절차



● 접수

● 필수 제출자료

- 지원신청서+사업계획서 1부
- 단체 또는 개인 소개서 및 주요활동 실적 1부
- 단체 또는 개인 증빙서류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접수 방법

- 화성시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 ▶ 화성예술인DB(www.artist.hcf.or.kr) 지원사업 시스템 ▶ 온라인 접수
- 공고문 내 첨부파일의 지원신청서 지정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 업로드시 파일명 : 장애·다문화 특화지원_지원자명(또는 단체명)
- 파일 형식 : PDF
- 별도의 신청서(양식)로 제출시 심의에서 제외

● 평가

- 모니터링
 - 지원받은 사업은 필수적으로 재단 모니터링 및 관련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 정산 및 성과보고서, 설문조사지 등 관련 자료를 기한(11월 28일) 내에 성실히 제출해야 합니다. (영상 등 성과 관련 자료 의무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시 평가 불이익이 있습니다.)

● 지원대상 사업의 변경조치

- 사업명, 사업일시, 사업내용 등 변경 사항 발생 시 사전 변경 신청 필수
 - '사레비'를 제외하고 전체 사업비의 10% 이내의 예산 변경은 별도 신청 없이 가능
- 사업 선정 후 지원신청서를 기준으로 사업계획의 과도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변경에 따른 조치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

구분	변경항목	해당분야	조치사항
사업주체	변경 불가	전 분야	지원금 취소
포기	사업포기기간 이후 사업포기 ※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예외		지원금 취소(환수) 및 차년도 지원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사업량	지원신청 당시 사업량 또는 사업일수(횟수) 50% 초과 축소		협의를 통해 지원금 삭감 또는 평가 불이익
변경 미신청	변경 신청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변경신청 하지 않은 경우 ※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예외		1~2회 : 주의 및 사후변경신청 3회 이상 : 평가에 반영(차년도 심의에 반영 가능)

● 홍보물 제작 관련 안내

- ◇ 각종 홍보물(현수막, 포스터, 전단, 팸플릿 등)과 인쇄물을 제작하는 경우
 - [주최 : 화성특례시, 화성시문화관광재단 / 주관 : 예술인(단체)명] 기재 필수
 - 화성특례시, 화성시문화관광재단 로고 삽입 필수
 - “<2025 장애·다문화 예술인 특화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았습니다.” 기입 필수
- ※ 사업 1개월 전까지 홍보물(인쇄물 또는 이미지)을 담당자에게 송부하여 재단 홈페이지에 업로드 되어야 합니다(필수).

● 문의

- 화성시문화관광재단 예술지원팀 031-290-4669
- 문의시간 평일 10시~17시(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2025
화성예술지원
통합공모
지원안내서

지원금 집행 및 정산요령

Hwaseong
Culture & Tourism
Foundation



1 추진절차

단계	구분	시 기	내 용
①	선정결과 공고	2025. 3. 28.	• 화성시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www.hcf.or.kr) '공고' 선정 예술인(단체)
②	중복지원 확인	2025. 4. 1. ~ 4. 4.	• 선정대상 중복지원 확인
③	사업포기 기간	~ 2025. 4. 10.	•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될 경우, 사업포기신청서 제출(양식 첨부) • 재단 담당자에게 유선 연락하여 절차 안내 요청 * 타 기관과 동일 사업 중복 지원 불가
④	교부신청	사업 선정 한 달 이내 *화성예술활동지원 사업에 한해 상하반기 접수 예정	• 지원금 관리를 위한 계좌(신규계좌 개설 혹은 기존 계좌(0원) 사용) 및 체크카드 발급 • 결정된 지원금으로 교부신청서 작성하여 제출 • 산출근거는 지원금 운용지침(주요 보조사업비 예산 집행 기준 및 방법)을 준수하여야 함 * 심의 시 조건부 의결로 선정된 경우,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신청서 작성 * 포기신청 기간 이후에 적절한 이유 없이 사업포기 신청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차기 년도 사업 신청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재단 담당자가 교부신청서를 검토 • 접수 후 14일 이내 지원금 교부 예정 (단, 재단 상황에 따라 지원금 교부가 지연될 수 있음)
⑤	사업수행	사업기간 내	• 지원금 교부 후 사업수행
⑥	현장평가 및 모니터링	사업기간 내	• 평가위원의 현장평가 및 사업 담당자 모니터링 진행 • 사업별 관객 만족도 조사 진행 적극 참여 의무
⑦	사업변경	해당 사항 발생 시	• 교부신청 이후 사업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 • 지원금 교부 후, 사업계획을 크게 변경하거나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변경 신청서 송부 • 사업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포기)이 발생한 경우 재단 담당자에게 유선 연락하여 절차 안내 요청 * 사업종료 이후 사업변경 불가
⑧	지원금 정산 및 결과보고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	• 정산보고 및 결과보고 등록 후 제출, 잔액이자 반납 • 지원금 집행 및 정산은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 마감되어야 함 * 사업완료 기한 : 2025. 10. 31.(금) * 사업정산 기한 : 2025. 11. 28.(금) * 기간 내 정산자료 미제출 시 추후 지원사업 지원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2 교부신청

가 지원금 계좌(체크카드) 준비

1) 지원금을 교부 받을 계좌와 체크카드 준비

- 계좌를 신규 개설하거나 기존 계좌의 잔액을 전부 인출하여 사용(은행 제한 없음)
- 기존 계좌 사용 시 교부신청서 내에 잔액 0원이 찍힌 통장 사본 첨부 요망
- 체크카드 사용이 필요 없으면 발급 생략

2) 1개 사업 당 1개의 전용 계좌(체크카드) 사용 원칙

- 동일한 계좌로 타 사업 및 타 기관 지원금을 함께 받아 사용할 수 없음

3) 예금주는 단체의 경우 '단체명', 개인은 '본인 실명'으로

- 단체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 계좌 개설 가능(대표자명과 단체명을 함께 명기 권장)
ex) 김○○(극단○○○)

4) 지원금 집행은 거래처로 직접 '계좌이체' 혹은 지원금 전용 '체크카드' 사용 건만 인정

- 지원금을 현금 인출하거나 본인 및 단체의 타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할 수 없음

5) 자부담금은 지원금 계좌와 별도 분리하여 관리

- 자부담금이 있을 경우 지원금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반드시 타 계좌에서 사용 및 집행
- 자부담금 지출 시에는 개인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사용 가능
- 자부담금 관련 정산 없음(단, <모든예술31>도 회계법인 정산은 없으나, 영수증 확인 진행)

6) 사업 종료 후 5년간 통장 보관 必(재단 요청시 제출)

- 통장 표지에 지원년도, 지원사업 분야, 사업명을 메모하여 보관

나 | 교부신청

• 교부신청

제출처	artsupport@hcf.or.kr
제출기간	사업 선정 한 달 이내 ※화성예술활동지원사업의 경우 상·하반기 접수
제출방법	교부신청서(재단 지정서식, 별도첨부) 한글 파일, 최종 사업계획서(공모 시 제출했던 계획서의 최종버전) 1부, 지원금 계좌 사본 1부,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각종 동의서 및 서약서 등
지원금 교부시기	접수된 교부신청 승인 이후 14일 이내(재단 상황에 따라 지연될 수 있음)
사업수행기한	~ 2025. 10. 31.(금) ※ 작품발표, 지원금 집행 완료를 포함한 기간

- 예산 작성시에는 3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을 참고하여 작성
- 사업 담당자가 교부신청서를 검토한 후 재단의 지원금 관리 지침에 따라 사업내용 및 예산편성 조정을 요청할 수 있음
- 사업 담당자가 승인한 최종 교부신청서 서류를 기준으로 교부신청 진행

• 교부신청서의 적정성 검토

- 지원금의 집행은 교부신청 시 작성한 예산 집행 계획에 의하여 집행되어야 함
- 사업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는 등 조정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재단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교부신청 시 사업계획’이 ‘지원신청 시 사업계획’과 상당 부분 다를 경우, 재단은 지원금 규모를 재조정 하거나 해당 사항을 사후 평가에 반영할 수 있음
- 사업의 변경으로 당초 사업의 기대효과가 상당 부분 저해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재단은 교부 결정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선정 이후이라도 선정된 사업이 지원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할 경우, 재단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3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 예산 편성 시 유의사항

-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에 부합하며 보편타당하고 실행가능한 적정 예산을 편성해야 함
- 지원금의 최소 5~10% 해당하는 금액을 자부담 편성 권고

■ 예산편성 불가 항목

- 단체운영 목적의 자본적 경비
- 자산 취득비(장비 구입),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전화설비 등
- 예비비, 잡비 등 구체적인 사용 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포괄적인 예산편성
- 지원사업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예산항목
- 지원금을 통한 재교부 사업 관련 경비 : 상금, 상금 심사비 등
- 사업의 상당 부분을 용역/하도급 비용으로 편성하는 경우(지원사업은 보조사업자의 직접 수행이 원칙)
- 지원사업자의 일상적인 운영경비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품 및 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등 단체 운영경비)

■ 회계검사수수료

- 모든 사업에 회계검사를 실시(문학 출간부분 제외)
- 회계검사는 재단이 지정한 회계검사법인이 선정 사업의 사업비 사용실적과 세부 집행내역을 검증하고 증빙하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임
- 이에 모든 선정 예술인(단체)은 **기타운영비** 세목으로 아래 기준에 따른 **수수료를 필수 편성**바람

사업규모	수수료	비 고
• 5백만원 미만	150,000원	• 회계검사 대상 금액은 재단 지원금 결정액 의 사업 규모로 산출함 ※ 자부담금은 회계법인 정산에서 제외
• 5백만원 이상 ~ 1천만원 미만	200,000원	
• 1천만원 ~ 1천 5백만원 미만	250,000원	
• 1천 5백만원 ~ 2천만원 미만	300,000원	
• 2천만원 ~ 2천 5백만원 미만	350,000원	
• 2천 5백만원 ~ 3천만원 미만	400,000원	

■ 세목별 집행기준

세목	내 용	집행수단 및 정산증빙자료	
사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연료, 연출료, 안무료, 강사료, 원고료, 인건비 등 각종 수당과 인건비 (일반 개인 대상) 원천세(사업3.3%/기타8.8%)를 포함한 금액 작성 예술인고용보험 해당 시, 예술인부담분의 보험료(0.8%) 포함 즉, 원천세와 보험료를 포함한 계약금액으로 작성 지급 시에는 원천세와 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이체 (이후 원천징수 및 보험료 신고 납부 필수) 대표자 혹은 개인 사례비는 지원금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 : 20%(최대 200만원 한도)까지 편성 가능 - 개인 : 20%(최대 150만원 한도) 까지 편성 가능 	계좌 이체	✓ 필수 1. 이체확인증 2. 표준계약서 3. 사례비지급내역서 4.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5. 국세 납부 확인서 6. 지방세 납부 확인서
			✓ 필요 시 7. 사업(기타)소득 원천징수 지급명세서 8. 종합소득세 신고 서약서 9. 예술인 고용보험 완납 증명원
홍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홍보 마케팅을 위한 각종 홍보물 제작, 인쇄, 디자인, 광고비 등 작품집, 도록, 연구서적, 프로그램 북 등 도서 인쇄물의 발간 비용 	체크 카드	1. 체크카드 영수증 2. 견적서(거래명세서)
		계좌 이체	1. 이체확인증 2. 전자(세금)계산서 3. 견적서(거래명세서)
제작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상, 음악, 무대, 소품, 의상, 액자, 악보 등 창작을 위한 각종 제작비에 해당하는 세목 사업자 대상 각종 문화예술 영역 등 재료비' 세목과 혼동 않도록 유의 ex) 소품을 전문 업체에 수주 제작 = 제작비 소품을 직접 만들기 위한 재료 구입 = 재료비 	카드	1. 체크카드 영수증 2. 견적서(거래명세서)
		계좌 이체	1. 이체확인증 2. 전자(세금)계산서 3. 견적서(거래명세서)

세목	내 용	집행수단 및 정산증빙자료	
재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품, 도구 등 창작을 위한 각종 재료 편성불가 : 자산으로 취득 가능한 장비구입 	체크 카드	1. 체크카드 영수증 2. 견적서(거래명세서)
		계좌 이체	1. 이체확인증 2. 전자(세금)계산서 3. 견적서(거래명세서)
기타 운영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위 예산과목에 속하지 않는 기타 비용 ✓ 필수 회계검사수수료 : 기준표 참고하여 편성 예술인고용보험료 : 예술인고용보험 해당 시 사업주 부담금 0.8% 미리 편성 회의운영비: 지원금의 3% 이하로 편성 가능 ⇒ 단체의 경우 자부담으로 책정 권고 편성불가 : 행사기념품, 경품, 교통비, 유류비 (해당사항있는 경우) 저작권료 편성 	카드 집행	1. 체크카드 영수증 2. 견적서(거래명세서)
		계좌 이체	1. 이체확인증 2. 전자(세금)계산서 3. 견적서(거래명세서)
		공통	회의운영비 집행 시 ✓ 필수 회의/행사일지
대관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연장, 전시장, 작업실, 스튜디오, 연습실, 회의실 등 각종 공간 대여 및 부대시설 사용료 편성불가 : 일상적인 운영경비(사무실 임대료, 작업실 월세), 단체운영 목적의 자본적 경비(시설비) 등 	체크 카드	1. 체크카드 영수증 2. 견적서(거래명세서) 3. 대관계약서
		계좌 이체	1. 이체확인증 2. 전자(세금)계산서 3. 견적서(거래명세서) 4. 대관계약서
임차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비, 소품 대여비 등 	체크 카드	1. 체크카드 영수증 2. 견적서(거래명세서)
		계좌 이체	1. 이체확인증 2. 전자(세금)계산서 3. 견적서(거래명세서)

■ 집행수단 별 증빙자료

집행 수단	구분	필요서류	내용	발급방법
체크 카드	필수	체크카드 영수증	거래 상세내역(품목,수량,단가), 결제일시, 카드번호, 가맹점명이 확인 가능해야 함	거래처, 카드사
	해당 시	견적서 (거래명세서)	카드영수증에 상세내역(품목,수량,단가 등)이 미표시된 경우 혹은 결제금액이 50만원 이상일 경우	거래처
		회의 및 행사일지	기타운영비-회의비 집행 시 필수제출자료	재단 지정서식
계좌 이체	필수	이체확인증	출금계좌번호, 이체일시, 받는 이의 성명과 계좌번호, 이체금액 등이 확인 가능해야 함	은행
		전자(세금)계산서	단체는 사업자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로 발급 (전자가 아닌 수기 및 종이 (세금)계산서는 불인정)	거래처
	해당 시	견적서 (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에 상세내역(품목,수량,단가)이 미표시된 경우 혹은 결제금액이 50만원 이상일 경우	거래처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업체와 거래할 경우 반드시 재단 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국세청 지정코드(010-000-일이삼사) 로 발급	거래처
	회의 및 행사일지	기타운영비-회의비 집행 시 필수제출자료	재단 지정서식	
계좌 이체 (사레비)	필수	이체확인증	받는 이의 성명과 계좌번호가 확인 가능해야 함 (거래내역서, 인터넷뱅킹 화면 캡처 가능)	은행
		표준계약서	계약서의 내용은 계약 상황에 맞게 자유 변경 가능 계약 시작일과 종료일 필수 기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제공 서식
		사레비 지급내역서	사레비 지급 대상자의 정보를 일괄 작성	재단 지정서식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원천징수 관련 필수제출자료	홈택스, 세무서
		국세 납부확인서	사업소득 3% / 기타소득 8%	홈택스, 은행, 세무서
		지방세 납부확인서	사업소득 0.3% / 기타소득 0.8%	위택스, 은행, 세무서
	해당 시	사업(기타)소득 원천징수 지급명세서	사레비 지급내역서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국세 및 지방세 납부확인서 간 금액이 불일치할 경우	홈택스, 세무서
		종합소득세 신고 서약서	본인 혹은 대표자 사레비 집행 시 필수제출자료	재단 지정서식
		예술인 고용보험 완납 증명원	예술인 고용보험 신고, 납부 시 필수제출자료	근로복지공단

■ 지원금 집행 시 유의사항

- 지원금을 교부받기 전에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해당 비용에 대한 사후 지급 및 정산 불가
- 지원금 집행은 거래처에 직접 '계좌이체' 혹은 '체크카드' 결제를 원칙으로 함
- 계좌이체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불가(거부) 업체와의 거래 지양
- **지원금을 현금 인출하거나 타 통장으로 이체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집행은 불가**
- 영수증 등 증빙자료는 집행과 동시에 발급받고, 사업 종료 후에 일괄 소급하여 발급받지 않도록 함
- 정산서 및 결과보고서, 지원금 통장, 지출 증빙자료 간에는 집행 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해야 함

■ 온라인 결제 시 유의사항

- 계좌이체가 아닌 **체크카드** 사용 원칙
- 부득이하게 무통장입금 진행 시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확인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려울 경우, 반드시 재단 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현금영수증 발급
- 쇼핑몰 사이트 내 포인트 적립 및 사용을 금함
-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사용 시 계좌를 연결하여 충전 결제 금지
- 캐시백, 체크카드 할인 등 발생할 경우 정산 시 '이자'로 처리

■ 지원금 집행 불인정 항목

- **정산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
 - 전자(세금)계산서 혹은 카드영수증(매출전표)을 발급하지 않은 집행 건(사레비 외)
 - 종이에 수기로 작성한 (세금)계산서
 - 부득이한 사유로 전자(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았으나, 국세청 지정코드(010-000-일이삼사)로 발급하지 않았을 경우 ★010-000-일이삼사로 현금영수증 번호 입력 필수★**
 - 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의 작성일자가 교부신청서 상 사업기간을 경과한 경우
- 현금 입출금,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 처리
- 지원금 교부 이전에 지원금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선집행하는 경우(사후 지급 및 정산 불가)
- 영수증 등 증빙자료 사후 일괄 발급(모든 서류와 자료 간의 집행일자 및 금액은 상호 일치해야 함)
- 정해진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목적 외 사용금지)
- 친족 간 혹은 출연진(참여자) 관련, 소유 업체 등과의 거래

■ 지원금 카드 사용 제한 업종

- 유흥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흥주점,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
- 위생업종 : 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 서비스
- 레저업종 :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 기타업종 :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 지원금 교부 시 서약사항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의 교부를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되는 보조사업자는 다음연도부터 3년간 지원사업 신청자격을 상실함.

- ①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사항을 위반할 것이 확실하거나 위반하였을 때
- ② 지원사업의 목표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 ③ 임의로 사업을 포기하거나 또는 중단하였을 때
- ④ 정상적인 금융 거래 및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 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였을 때
- ⑥ 이 규정에 의한 의무나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 ⑦ 보조금 정산서를 특정한 이유 없이 1개월 안에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였을 때

참고 사례비 집행 시 유의사항

- 사례비란 출연료, 연출료, 안무료, 강사료, 원고료, 인건비 등의 각종 수당과 인건비를 말함
- 타인에게 사례비 세목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모두 **원천징수** 대상으로 **원천세**가 포함됨
- 또한, **예술인고용보험** 대상 조건에 해당할 경우, **고용보험료**가 포함될 수 있음
- 사례비를 편성할 때는 **원천세와 고용보험료**(예술인 부담분 0.8%)를 포함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사업주 부담분의 고용보험료 0.8%를 기타운영비 세목으로 별도 편성
- 사례비를 실제 지급할 때에는 원천세와 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대상자에게 이체해야 함
- 이후 원천세와 고용보험료는 지급자가 직접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함
 - ※ 단체 대표자 사례비의 경우 **지원금의 20% 이내, 최대 200만원까지** 편성할 수 있음.
 - ※ 개인 본인 사례비의 경우 예술활동 및 창작활동 시 본인 사례비가 인정되며, **지원금의 20% 이내, 최대 150만원까지** 편성할 수 있음.

4

정산 및 결과보고

가 실적보고서 작성

- 사업 종료 이후 1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정산서+결과보고서) 작성 완료하여 송부
- 서식 별도 첨부
- 최종 정산 검토 완료 11월 28일까지 완료 필수

나 잔액 및 이자 반납

- 지원금 잔액 1원 이상, 이자 발생액 1원 이상 발생 시 재단에 반납(자부담금은 해당 없음)
- 반납 계좌 정보는 재단의 각 사업 별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회계법인 검토 종료 이후 월별 일괄 안내 예정)

다 정산단계 안내

- 정산 단계 안내

• [예술단체/개인] 실적보고서 작성 및 회계법인 송부 → 회계법인 검토 → 회계법인 확정 및 검토보고서 송부 (11월 28일까지 마무리 必(필)) → 재단 확정 → [예술단체/개인] 재단에서 안내해주는 계좌로 정해진 일자에 잔액 및 이자 반납 → [예술단체/개인] 회계법인으로 최종 실적보고서 원본 송부 & 재단으로 성과물 송부(이메일 제출 가능)

구분	제출서류	비고
필수	1. 실적보고서 2. 각종 증빙자료 첨부	실적보고서 재단서식 별도 첨부
필수	3. 성과물(영상, 사진 등)	공연의 경우 10분 내의 영상 제출 필수, 전시의 경우 작품 및 전시전경 고화질 사진 필수

2025
화성예술지원
통합공모
지원안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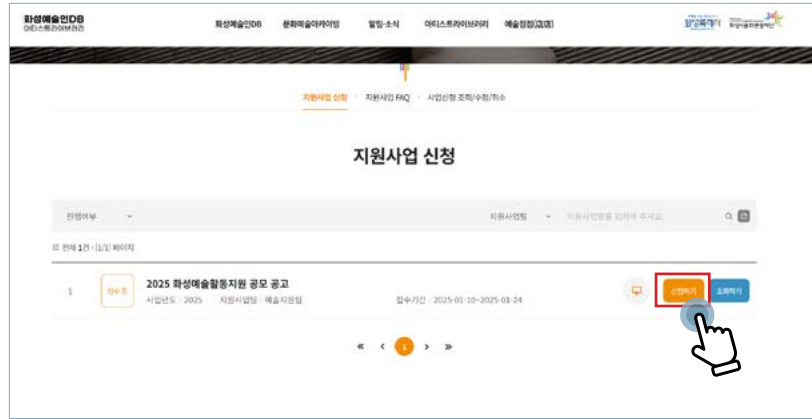
화성예술지원 접수시스템 안내

화성예술인DB(artist.hcf.or.kr) 이용 시

- 각 사업별 첨부파일 양식을 모두 작성하신 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사업 관련 안내는 기재하신 신청자 연락처를 통해 전달 되오니,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주세요.
- 지원신청 마감 이후에는 지원신청서의 수정 및 제출이 불가합니다.
- 지원신청 마감일에는 접속자가 몰려 서버가 다운될 수 있으니 미리 최종 제출하여 주세요.
- 자세한 안내 매뉴얼은 '화성예술인DB - 지원사업신청 - Q&A' 에서 확인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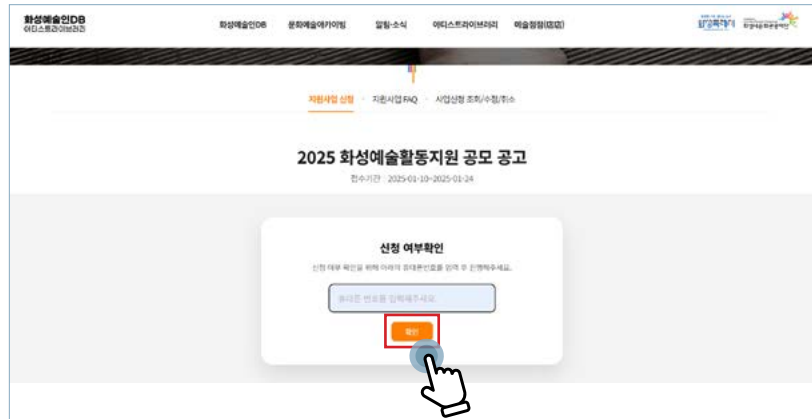
지원사업 신청 공모 내용 확인

- 1 공모 내용 확인 후
- 2 신청하기 버튼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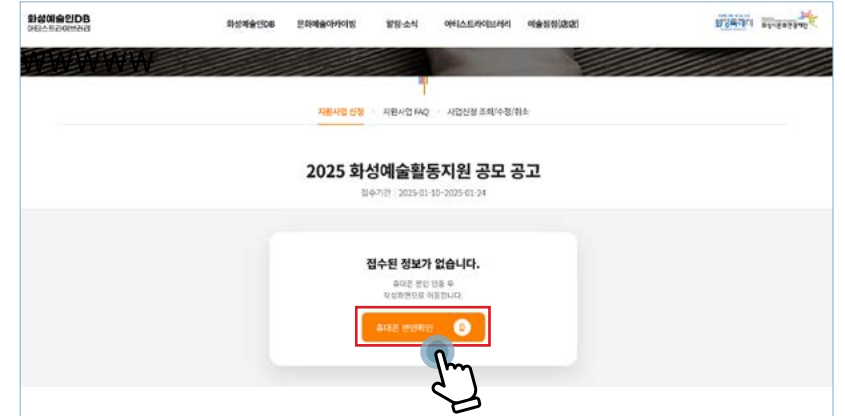


지원사업 신청 본인 인증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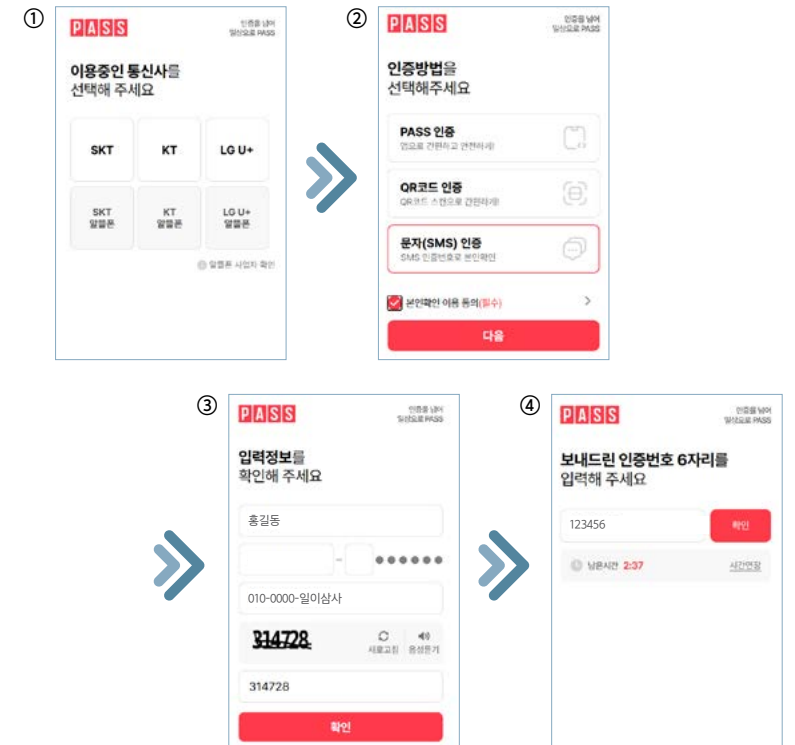
- 3 신청 여부확인 : 본인의 휴대폰 번호 입력 후 확인 버튼 클릭



- 4 휴대폰 본인확인 버튼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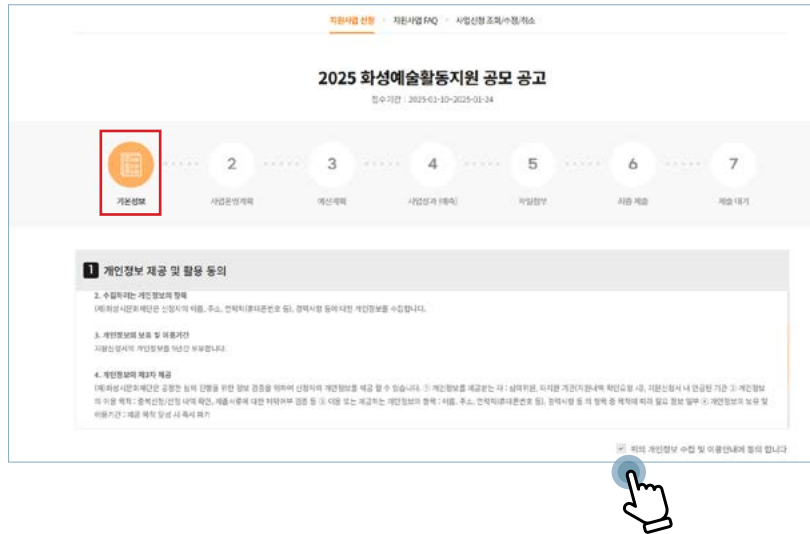


- 5 번호 순서대로 입력하여 본인 인증하기 (② 인증방법 : 본인이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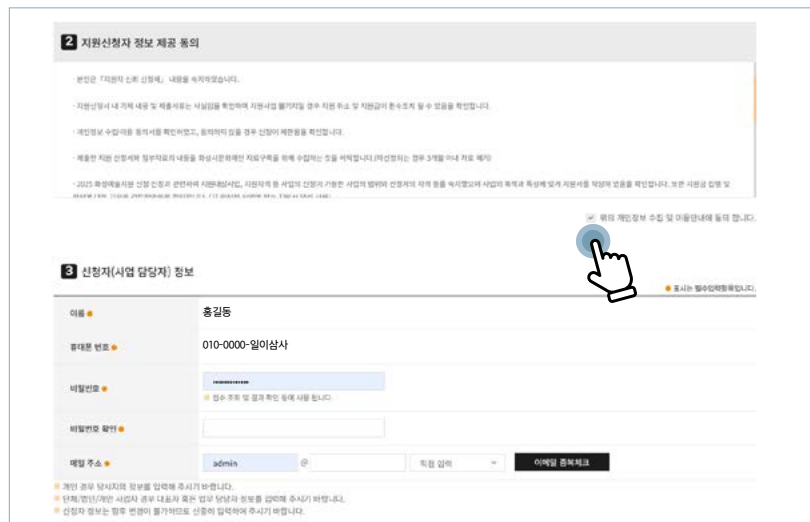
지원사업 신청 기본정보

6 기본정보 입력 - 1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 ✓ 체크하기



7 2 지원신청자 정보 제공 동의 ✓ 체크, 3 신청자(사업 담당자)정보 - 비밀번호 설정, 메일주소 입력 후 이메일 중복 ✓ 체크

(이름과 휴대폰 번호는 자동 설정됩니다. 지원사업 관련 안내는 기재하신 연락처를 통해 전달되오니 정확히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4 5 6 7 8 정보 입력 후 임시저장 및 다음 클릭



2025
화성예술지원
통합 공모

2.4.(화) _ 2.25.(화)



황정경
<SALT 2024, Salt & Resin on Acrylic>

2025 화성예술지원 통합 공모

2.4.(화) _ 2.25.(화)

화성시문화관광재단

2025
화성예술지원
통합 공모



황정경 <SALT 2024, Salt & Resin on Acrylic>

신청기간

2.4.(화)

—
2.25.(화)

화성예술활동지원 | 모든예술31 화성
신진예술인 자립지원 | 장애·다문화 예술인 특화지원

지원사업 신청
사업운영계획

- 9 사업 운영 계획 - 첨부 파일 양식에 작성한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 후 **일시저장 및 다름** 클릭 (지원신청금액 입력 - 정액인 경우 금액 변경 불가하며, 각 사업별 지원가능 금액 내에서 입력이 가능합니다)

지원사업 신청
예산계획

- 10 지원금 - 일반운영비 중 회계검토수수료는 지원 신청 금액대별로 자동 설정되며, **+** 클릭하면 각 과목별 5개까지 입력 가능합니다.
자부담 - 자부담 있을 시 자부담 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지원사업 신청 사업성과 예측

11 사업성과(예측) - 사업 결과에 대한 사업성과(예측) 작성 (관련 없는 부분은 '해당없음'을 체크해야 다음 단계로 이동됩니다)

1 사업성과(예측)
 * 계획적인 성과 예측 값을 기재해 주세요. * 표시는 필수입력항목입니다.

발표 작품 수 * 총 작품 수 : 0 = 창작시간 [] * 기존 창작물 [] * 외국 창작물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항목은 비워주세요.

공연 * 공연횟수 : [] 회 / 공연기간 : [] 월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항목은 비워주세요.

전시 * 전시횟수 : [] 회 / 전시기간 : [] 월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항목은 비워주세요.

세미나, 강좌, 연구 등 * 행사 수 : [] 회 / 행사기간 : [] 월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항목은 비워주세요.

발간물 * 총 수 : [] 권 / 부수 : [] 부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항목은 비워주세요.
 * 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를 작성해 주세요
 * 공연, 전시등 프로그램, 라운드, 도록 등은 제외

사업참여 예술인 수 * 총 수 : [] 명 * 협력 : [] 명

관객(독자) 행사 참여자 수 * 총 : [] 명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항목은 비워주세요.

주 권역(독자) * 중복신청 가능
 일반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외국인 기타 []

관람객 수 * 총 수 : [] 명 * 유료관람객 : [] 명 * 무료관람객 : [] 명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항목은 비워주세요.

이전 임시저장 및 다음

지원사업 신청 파일첨부

12 파일 제출하기 - 각 사업별 다운받은 지원서 작성하여 파일 첨부 진행 (50MB까지 가능하며, 반드시 pdf 파일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정보 사업신청서 작성세탁 예산세탁 사업성과(예측) **파일첨부** 최종 제출 제출 대기

1 서식 다운로드

서식 파일 다운로드
 1. excel서식용.xlsx (5kb)
 2. pdf서식용.pdf (13kb)
 3. pdf서식용.pdf (13kb)

2 첨부파일명 안내
 1. 첨부한 서식별로 작성 후 파일첨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파일명 PDF 형식으로 변경하여 제출 하셔야 합니다. (예시: 오트송리모.pdf)
 3. 첨부 파일 용량은 1개당 50MB를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4. 첨부 완료 메시지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 파일 제출 하기
 * 표시는 필수입력항목입니다.

첨부파일1 * 선택한 파일 없음/ 파일 확장자: pdf / 용량: 5MB 미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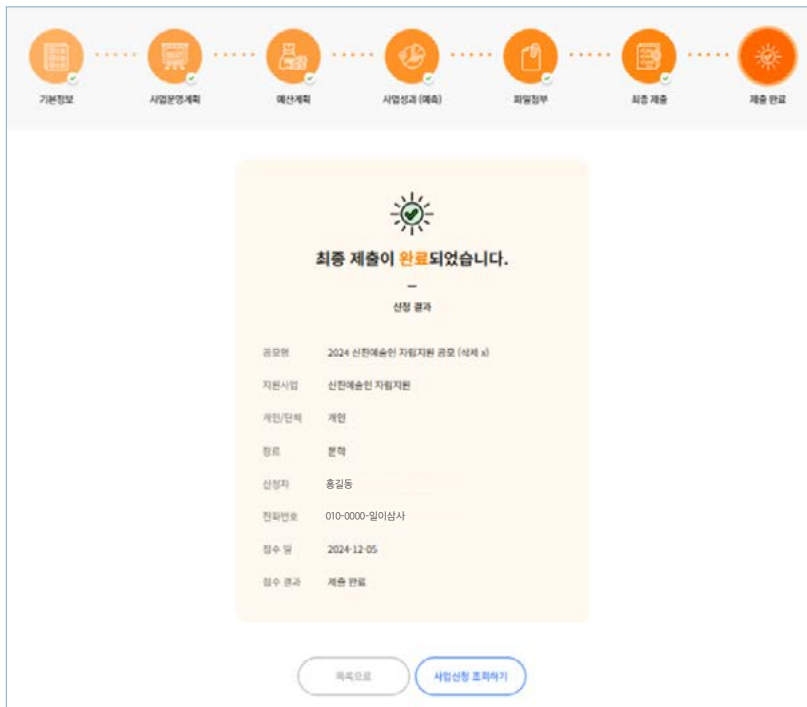
첨부파일2 * 선택한 파일 없음/ 파일 확장자: pdf / 용량: 5MB 미만

첨부파일3 * 선택한 파일 없음/ 파일 확장자: pdf / 용량: 5MB 미만

이전 임시저장 및 다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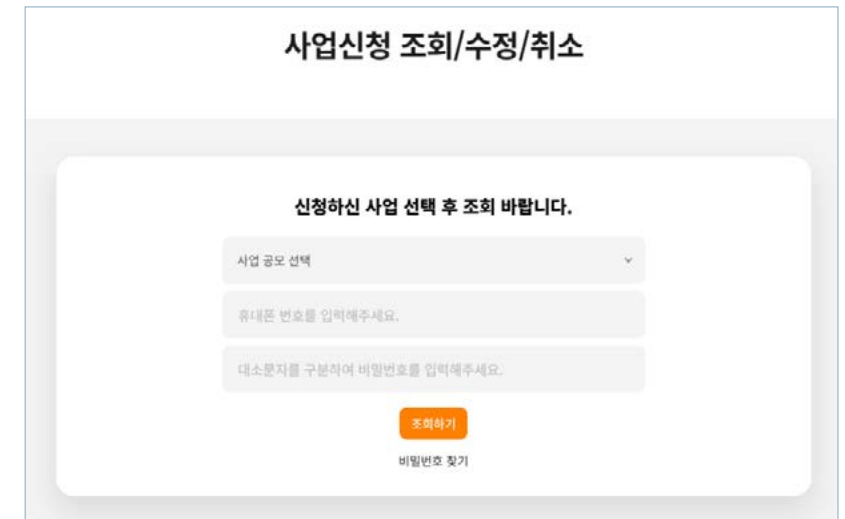
지원사업 신청
최종 제출하기

13 최종 제출하기 - **최종 제출하기** 클릭
(문자로 지원신청 완료 문자가 발송됩니다)



지원사업 신청
사업신청
조회/수정/취소

※ 신청서 제출 완료 후 사업신청 조회 및 수정/취소가 가능하며, 신청자(사업담당자)정보 입력 시에 설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지원사업
Q&A

- Q. 중복 지원 가능한가요?
- A. 모든 사업별 중복 지원은 가능하나, 중복 선정은 불가합니다. 중복 선정시에는 하나의 사업을 포기해야 합니다.

- Q. 중복 지원 시에 본인인증을 또 해야 하나요?
- A. 여러 개의 사업을 지원하실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새로 본인인증을 진행하셔야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2025 화성예술지원> 통합공모 지원안내서

발행처 화성시문화관광재단

발행일 2025. 2. 7.

주최·주관 화성특례시, 화성시문화관광재단

후원 경기도, 경기문화재단(경기예술지원 모든예술31 사업에 해당)

예술지원팀

1. 화성예술활동지원 031-290-4666
2. 경기예술지원 모든예술31 화성 031-290-4668
3. 신진예술인 자립지원 031-290-4667
4. 장애·다문화 예술인 특화지원 031-290-4669

디자인/제작 디자인봄 www.design-bom.kr

* 본 책자에 기재되어있는 공모 내용은 화성시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 플러스채널 친구 '화성시문화관광재단 예술지원'을 추가해 주시면 예술지원 소식을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